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안내문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추천 기관에서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유형 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급내역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지하 4층, 지상 25층 30개동 총 3,432세대[조합 1,007세대, 임대주택 241세대, 보류지 19세대 포함] 일반공급 2,165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특별공급1세대,일반공급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세대(기관추천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이후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구 분(약식표기)		73A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9)	1(9)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은 타입(약식) 표기이며, 안내문 등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계약취소 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분양일정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1.26.(월)	26.01.30.(금)	26.02.04.(수)	26.02.09.(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3층 302호(인계동,대륜빌딩)) ※ 당첨자 대상 상세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재 견본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방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단,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 시 '자격확인 제출서류'의 공통서류 및 유형별 필수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 합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방문접수시간 : 10:00 ~ 13:30

-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 및 청약자격

신청자격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대상자(장애인) 불필요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및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 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2조의4에 해당하는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배정합니다. (미 신청, 미 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9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한 지역별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 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의거하여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및 분양권 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동 804호(73A타입)

: 1551-5459

단지배치도



평면도

